

제2753호
2020. 7. 2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규 칙]

제723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제72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5

● 공 고

제2020-554호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6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1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자 치 법 규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23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1호를 25호로 하며 제21호부터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주택특별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22.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 23.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24. 민영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제19조 제4호부터 7호까지를 삭제하고 4호와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6호에서 제8호로 개정한다.

-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5.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8조(도심재생과) 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0. (생략)</p> <p>21. <신설></p> <p>22. <신설></p> <p>23. <신설></p> <p>24. <신설></p> <p>25. <신설></p>	<p>제18조(도심재생과) 도심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20. (현행과 같음)</p> <p>21. 주택특별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p> <p>22.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p> <p>23.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p> <p>24.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p> <p>25. 생활도시친화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p>
<p>제19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3. (생략)</p> <p>4. 주택특별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p> <p>5.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삭제></p> <p>6.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p> <p>7.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p> <p>8. ~ 10. (생략)</p>	<p>제19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신설></p> <p>5.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 <신설></p> <p><삭제></p> <p><삭제></p> <p>6. ~ 8.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가. 팀이관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과 주택재개발팀을 도심재생과로 이관함에 따라 부서 간 분장 사무 재조정 : 주택과 → 도심재생과

- 주택특별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규칙 제19조의4)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규칙 제19조의5)
-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재산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규칙 제19조의6)
- 민영주택사업에 관한 사항(규칙 제19조의7)

나. 주택과 소관 분장사무 구체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신설)
-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및 관리 (신설)
- ※ 규칙 제19조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24호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성과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구정의 능률성·효율성·효과성·책임성 등을 향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라 함은 규정업무 추진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라 함은 구가 추진하는 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제2장 성과 관리

제5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구 본청, 직속 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투자기관으로 하며, 기관의 성과 향상과 개인의 성과관리 통합·연계를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 운영 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7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①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계획을 매년 상·하반기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성과관리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며,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은 정책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의 역량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정기평가)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규정토록 한다.

제10조(수시평가) 구청장은 구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 성과평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자문·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4조(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성과평가 계획 수립 시 규정토록 한다.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현황을 확인·점검하여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정책, 예산, 인사, 조직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모범사례 확산 등) ① 구청장은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추진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표창, 포상금·성과급 지급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성과관리위원회

제18조(성과관리위원회)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 2.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3.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4.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5.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 6. 이의신청 및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1. 소속 공무원
 - 2. 성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 2. 제23조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 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심의 및 평가단의 평가에 참여한 위촉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가. 수요자 중심 성과관리 제도 도입에 따른 다양하고 균형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의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규칙 전반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

- (기존)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성과관리에 관한 규칙

나. 조항구성

- 제1장 : 성과관리의 목적 등 총칙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제2장 : 성과관리(평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제3장 :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제4장 : 성과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554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6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6지구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2020.7.24.~2020.8.24.)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정비구역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6 지구	중구 수표동 35-10 일대	4,993.0	-	4,993.0	

2.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4,993.0	-	4,993.0	100.0	
정비기반 시설	소계	836.6	-	836.6	16.8	
	도로	58.9	-	58.9	1.2	
	공원	777.7	-	777.7	15.6	
획지	소계	4,156.4	-	4,156.4	83.2	
	획지	4,156.4	-	4,156.4	83.2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4,993.0	-	4,993.0	100.0	
상업지역	소계	4,993.0	-	4,993.0	100.0	
	일반상업지역	4,993.0	-	4,993.0	100.0	

2) 용도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	15 (15)	집산 도로	850 (82)	을지로2	낙원운동장	일반 도로	-		'05.8.25	
기정	소로	1	b	10 (10)	집산 도로	307 (50)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 도로	-		'05.8.25	
기정	소로	3	a	6 (6)	국지 도로	99 (50)	수표동 11-3	수표동 11-8	일반 도로	청소년 수련관		'16.10.6	
기정	소로	3	b	6 (6)	국지 도로	82 (82)	수표동 35-5	수표동 35-1	일반 도로	청소년 수련관		'16.10.6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내 폭원 및 연장임

2)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공원	역사공원	수표동 11-9 일대	1,240.4	-	1,240.4	'05.8.25	• 6지구 부담면적 : 678.6㎡
기정	공원	역사공원	을지로2가 101-43일대	1,551.0	-	1,551.0	'16.10.6	• 6지구 부담면적 : 99.1㎡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구분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율 (%)	비 고
을지로3가 구역	42,641.6	25,657.2	16,984.4	11,304.1	732.7	4,947.6	16.2	3지구 제외시 평균 순부담률 16.8%
사업 시행 지구	6지구 4,993.0	4,156.4	836.6	-	-	836.6	16.8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확보) 계획

(1)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변경

기 정					변 경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을지로3가 6지구	소 계		836.6		을지로3가 6지구	소 계		836.6			
	수표동	35-5	도로	11.5			수표동	35-5	도로	11.5	
		35-6		9.1				35-6		9.1	
		35-7		11.0				35-7		11.0	
		35-8		18.5				35-8		18.5	
		35-13		8.8				35-13		8.8	
	공동분담	도로 및 공원	777.7				을지로2 가	공동 분담	공원	11-8	200.6
				11-9		478.0					
				101-3 5		17.5					
				101-3 7		81.6					

※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 변경사유 : 공동분담 정비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변경

(2) 국·공유지 매입대상

구 분	위 치		지목	면 적 (㎡)		관리청	비 고
				공부(공유지분)	편입(공유지분)		
6지구 (정비기반 시설부지)	수표동	11-8	대	200.6(0.1/82)	200.6(0.1/82)	국(기획재정부)	

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분	지구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정	을지로3가 제6지구	4,993.0	획지	4,156.4	중구 수표동 35-10번지 일대	업무, 숙박, 주거	60 이하 단, 저층부는 기부채납에 따라 완화(최대80%)	600/800/-	70m이하	-		
변경		4,993.0	획지	4,156.4		업무	60 이하 (저층부 70 이하)	989 이하	70m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 당 없 음									
심의 완화 사항	용적률		① 기준용적률 : 600% 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 183.98% 적용									
			목적		인센티브 대상		요 건		인센티브		인센티브량	
			친환경개발 (의무)		녹색건축물 인증		그린1등급(최우수)		100%		183.98%	
					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		240(kWh/㎡·y)미만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주거)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개방형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도입시		3.98%			
			보행가로 활성화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50%			
무장애 도시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시										
안전·방재		방재관련시설		옥상녹화, 투수성포장, 우수저류조, 공동소화전 설치		30%						
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05.13%			<table border="1"> <tr> <td>공공 시설</td> <td> $\begin{aligned} \text{산식} &= 1.3\alpha \times (\text{기준용적률} + \text{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 1.3 \times (836.6\text{㎡}) / 4,156.4\text{㎡} \times (600\% + 183.98\%) \\ &= 205.13\% \text{ 적용} \end{aligned}$ </td> </tr> </table>								공공 시설	$\begin{aligned} \text{산식} &= 1.3\alpha \times (\text{기준용적률} + \text{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 1.3 \times (836.6\text{㎡}) / 4,156.4\text{㎡} \times (600\% + 183.98\%) \\ &= 205.13\% \text{ 적용} \end{aligned}$
공공 시설	$\begin{aligned} \text{산식} &= 1.3\alpha \times (\text{기준용적률} + \text{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 &= 1.3 \times (836.6\text{㎡}) / 4,156.4\text{㎡} \times (600\% + 183.98\%) \\ &= 205.13\% \text{ 적용} \end{aligned}$											
※ ①(600%) + ②(183.98%) + ③(205.13%) = 989.11%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서측(15m)도로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이격 ◦ 남측(8m)도로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격									

바. 정비계획 변경(안)도

〈정비계획결정도(기정)〉



〈정비계획결정도(변경)〉



사. 기 타

- 1) 공람기간 : 2020.7.24. ~ 2020.8.24.(31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6)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